KRi Paradigm : Leader

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용역협력업체 업무협약서

㈜**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**(이하 '갑' 이라 한다)와 **브랜다(BRANDA)**㈜(이하 '을' 이라 한다)는 '갑'이 지정한 용역업무와 관련한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본 협약은 '갑'과 '을'의 개별 용역계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존중 및 신뢰)
'갑' 과 '을' 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계약의 범위)
1) 조사 명칭: 한국 건기식 프로젝트
2) 주요 내용: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 컨셉을 개발
3) 결과물: 신제품 컨셉 보드

제 4 조 (업무협약 기간)
1) 본 계약의 기간은 2021 년 10 월 01 일부터 2021 년 11 월 30 일까지 한다.
2) 단, 부득이한 사정이나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'갑'과'을'의 상호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3) 본 용역의 완료시기는 '을'의 산출물을 제시하여 '갑'이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.

제 5 조 (계약금액 정산 및 대금지불)
1) '갑'은 '을'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제반 경비를 포함하여 다음에 따른다.
총 조사 금액 : 일금 이천만원 (₩ 20,000,000, 부가세별도)
2) '갑'은 '을'에게 최종보고서 수령 후 전체 금액인 일금 이천만원 (₩ 20,000,000, 부가세별도)을 '을'의 대금 청구 후 3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.

제 6 조 (업무협약 대상 및 개별계약)
1) '을' 은 '갑' 이 지정한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'갑' 이 지정한 일시에 '갑' 에게 제출한다.
2) 본 협약대상이 되는 개별 용역계약은, '갑'의 개별 용역의뢰 내역, '을'의 견적제출 및 '갑'과 '을'의 개별 용역비용, 일정합의 등 제반 개별 계약에 관한 일체의 상호 간 전달문서로 갈음한다.
3) 업무협약 대상은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, 문서작성,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용역계약에 해당한다.

제 7 조 (개별 용역결과물의 검수, 수정 및 보완)
1) '을' 은 개별 용역업무 결과물 납품 이전에 '갑'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, '갑'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'을' 은 이를 성실히 수정 또는 보완하여, '갑' 이 지정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.
2) '을' 은 검수에 입회할 수 있고, '갑'의 검수합격에 의하여 납품의 책임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.

3) '갑'의 요청에 의거 작업중인 목적물의 보완, 수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'을'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'을' 이 부담하기로 한다.

제 8 조 (개별 용역업무 지체 상금)
'을' 이 개별 용역업무이행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 일에 대하여 용역계약 대금의 1,000 분의 3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'갑'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개별용역계약 이행지체가 '을'의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 9 조 (협약의 해지)
1) '갑' 은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•해지할 수 있다.
① '을'의 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② '갑' 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'을'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.
③ '을' 이 개별용역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 일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.
④ '을' 이 '갑'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용역계약에 대한 권리,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.
⑤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이 본 협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.
2) '을' 은 본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해지 시점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계약으로 기 수령한 금액을 '갑'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1 항 5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업무의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'갑'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.

제 10 조(변상의 책임)
'을'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, '을' 은 이로 인하여 '갑'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개인정보보호)
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'개인정보보호 이행 서약서'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 해지와 피해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제 12 조(정보보안 및 유출금지의무)
1) '을' 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'갑'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'을'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.
2) '을' 은 '갑'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협약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'갑'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'갑'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지적재산권)
본 협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작물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'갑' 에게 귀속한다.

제 14 조 (관할법원)
본 협약이 포괄하는 개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,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,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,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21. 10. 01.

(갑)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 길 12, 3 층
(역삼동, 허바허바빌딩)
㈜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
대표이사 박 준 빈 (인)
조 우 철 (인)

(을)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 길 27,
13 층 16 호
브랜다(BRANDA)㈜
대표이사 장 준 수 (인)